

말리 (Mali)

◎ 주요 변동사항

구 분	2017	2019	비 고
사회보험 당연적용대상	근로자	근로자 및 일부 공공부문 근로자	적용대상 확대
보험료율 (근로자 / 자영자 / 사용자)	3.6% / 9% / 5.4%	3.6% / 9% / 5.4%	-
보험료 부과 하한 / 상한 소득	법정 월 최저임금 / 없음	법정 월 최저임금 / 없음	근로자 및 사용자 기준 보험료 부과 하한소득(법정 최저임금) 인상
연금수급 요건	58세 이상, 13년 이상 납부	55~58세 이상, 13년 이상 납부	연령 요건 완화
노령연금 지급률	최종 8년간 월평균소득의 26% + 12개월 초과 가입기간 12개월 당 2% 증액	최종 8년간 월평균소득의 26% + 12개월 초과 가입기간 12개월 당 2% 증액	-
일시금	협정이 없는 경우 가입자의 납부보험료를 반환	협정이 없는 경우 가입자의 납부보험료를 반환	-

1 근거법 제정 시기

- 최초법 : 1961년(사회보험기금), 1962(사회보장법)
- 현행법 : 1999년(사회보험), 1999년(임의적용, 2004년 시행)

2 제도형태

- 사회보험제도(Social insurance system)

3 적용대상

- 당연적용 : 근로자, 일부 공공부문 근로자
- 임의적용 : 자영자
- 특별제도 : 공무원, 치안판사, 군인

4

재원조달

- 가입자 : 총소득(월 소득 또는 분기소득)의 3.6%
 - 보험료 부과 하한소득 : 법정 최저임금(월 40,000 CFA francs)
 - ※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은 월납, 9인 이하 사업장은 분기납

- 자영자 : 5개의 소득군에 근거하여 분기소득의 9%
 - 보험료 부과 하한 분기소득 : 125,000 CFA francs
 - 보험료 부과 상한 분기소득 : 1,000,000 CFA francs

- 사용자 : 임금지급총액(월 또는 분기)의 3.4%(노령) + 2%(장애 및 유족)
 - 보험료 부과 하한소득 : 법정 최저임금(월 40,000 CFA francs)
 - ※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은 월납, 9인 이하 사업장은 분기납

- 정부 : 없음 (특별제도에 포함되지 않는 공공부문 근로자의 사용자로서 보험료 납부)

5

급여종류별 수급요건

- 노령연금
 - 노령연금
 - 55~58세 (조로(早老)의 경우, 53세) 이상, 보험료 납부기간 13년 이상 또는 임의가입자의 경우, 60세 이상, 보험료 납부기간 15년 이상
 - 고용관계 종료(퇴직) 필수
 - 조기연금 : 53세 이상, 보험료 납부기간 13년 이상 또는 임의가입자의 경우, 55세 이상, 보험료 납부기간 15년 이상
 - 상호협정에 따라 해외지급 가능 (상호협정이 없는 경우 퇴직연령 도달 또는 해외 영구이주 시 가입자의 총 납입보험료 반환)
 - 노령수당
 - 58세 이상, 보험료 납부기간 6년 이상 13년 미만 또는 임의가입자의 경우, 60세 이상, 보험료 납부기간 10년 이상 15년 미만

- 장애연금
 - 장애연금
 - 소득활동 능력 66.66% 이상 영구 상실 판정, 보험료 납입기간 8년 이상 또는 임의 가입자의 경우 10년 이상
 - 정상퇴직연령 도달 시 장애연금은 중단되며 노령연금으로 대체

- 유족연금
 - 유족연금
 - 사망자가 노령 또는 장애연금 수급자였거나 수급자격이 있었던 경우
 - 수급권 있는 유족은 사망한 가입자와 2년 이상의 혼인기간이 있는 배우자와 14세 미만 고아(견습생은 18세, 학생이나 장애아는 21세)
 - 유족수당
 - 사망자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13년 미만인 경우 또는 임의가입자의 경우 15년 미만인 경우 유족배우자에게 지급

6

급여종류별 지급액

- 노령연금
 - 노령연금
 - 가입자의 최종 8년간 월 평균소득의 26% + 120개월을 초과하는 가입기간 12개월마다 2%씩 증액
 - 임의가입자의 경우 최종 60분 기간 평균소득의 30% + 60분기 초과 가입기간 1년마다 2%씩 증액
 - 급여 산정을 위한 최저소득 : 법정 최저임금(월 40,000 CFA francs)의 2배
 - 노령연금 월 급여 상한액은 가입자의 최종 8개월간 월평균소득의 80%
 - 조기연금 : 58세(임의가입자의 경우 60세) 이전 수급개시 1년마다 5%씩 감액
 - 급여는 월별(임의가입자는 분기별) 지급
 - 노령수당
 - 법정 최저임금(월 40,000 CFA francs)의 52%를 지급
 - 임의가입자에 대해서는 보험료 산정 소득의 30%를 지급
 - 급여는 재원을 감안하여 평균 임금과 법정 최저임금의 변동에 따라 시행령으로 조정
- 장애연금
 - 장애연금
 - 가입자의 최종 8년간 월평균소득의 26% + 120개월을 초과하는 가입기간 12개월마다 2%씩 증액
 - 임의가입자의 경우 분기 간 평균소득의 30% + 60분기 초과 가입기간 1년마다 2%씩 증액
 - 급여청구 시점부터 조기 퇴직연령까지의 매1년마다 6개월의 가입기간 크레딧 인정
 - 급여 산정을 위한 최저소득 : 법정 최저임금(월 40,000 CFA francs)의 2배
 - 조기 퇴직연령 도달 시 장애연금은 중단되며 노령연금으로 대체
 - 급여는 재원을 감안하여 평균 임금과 법정 최저임금의 변동에 따라 시행령으로 조정
- 유족연금
 - 유족연금
 - 배우자연금 : 사망자가 수급 중이었거나 수급자격이 있던 노령 또는 장애 연금액의

50%(유족 배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균분 지급)

- 고아연금 : 고아 1인당 사망자가 수급 중이었거나 수급자격이 있던 노령 또는 장애 연금액의 10% (하한은 가족수당 금액(수급권 있는 아동 1인당 3,500 CFA francs, 장애아의 경우 4,000 CFA francs)이며, 상한은 사망자의 노령 또는 장애연금액의 50%)
- 유족수당
 - 보험료 납부기간 6개월 당 사망자의 156개월(임의가입자는 80분기)간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 산정된 노령연금 월급여액 1개월분을 일시금으로 지급
 - 유족배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균분 지급
 - 급여는 재원을 감안하여 평균 임금과 법정 최저임금의 변동에 따라 시행령으로 조정

7

관리운영기관

- 연대인도주의행동부(Ministry of Solidarity, and Humanitarian Action)
 - 전반적인 관리 및 감독
 - <http://www.solidarite.ml>
- 국가사회보험기관(National Social Insurance Institute)
 - 3자 위원회 및 총장의 지시에 따라 제도를 운영하고 보험료를 징수
 - <http://www.inps.ml>

<2019년 ISSA 자료>